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2] <개정 2023. 5. 15.>

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1조제1항제11호관련)

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 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아목·자목·타목(기원만 해당한다)·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]
  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7호의 공장
  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
  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
  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
  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
  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2.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
  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
  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·자목·타목(기원만 해당한다)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
  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
  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(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)
  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
  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
  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(「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)·학원(기술계학원에 한한다) 및 연구소(공업에 관련된 연구소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)
  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  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
  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
   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